

교원업적평가 소속계열 변경에 관한 세칙

(제정 2018. 2. 25.)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전주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교원업적평가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른 교원업적평가 소속계열의 변경(이하 “계열변경”이라 한다)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청자격) 계열변경 신청자격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한 교원으로 한다.

1. 교원으로 신규 임용된 후 6년 이상 재직한 부교수(또는, 신규 임용된 후 7년 이상 재직한 조교수로서 연구 분야의 특성을 고려하여 총장이 인정한 경우)
2. 최근 5년 동안의 연구업적이 500점 이상인 교원(다만, 연구업적 산정은 「교원업적평가규정」에 따른다.)

제3조(시기) ① 계열변경을 희망하는 교원은 매년 1월말까지 교원업적평가규정 [별첨 3]의 양식을 작성하여 교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열변경 시기는 매 학년도 3월 1일로 한다.

제4조(심사 대상 및 방법) ① 심사는 계열변경을 희망하는 교원이 심사받는 년도 1월 말 기준 최근 5년 동안 산학협력단에 제출한 모든 연구업적을 대상으로 한다.

② 교무처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연구업적의 계열을 판정하여야 하며, 계열 구분은 「교원업적평가규정」 제10조제1항을 따른다. 다만, 계열판정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연구업적에 대하여는 교원업적평가위원회에서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판정한다.

1. 논문은 게재된 학술지의 한국연구재단 학문분류에 따라 판정하며, 판정에 필요한 자료는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제공받는다.
2. 저서는 한국십진분류법(KDC)에 따라 판정하며, 판정에 필요한 자료는 도서관으로부터 제공받는다.

③ 교원업적평가위원회는 변경하고자 하는 계열에 해당하는 연구업적이 전체 연구업적의 3분의 2 이상인 교원에 대하여 계열변경 ‘가(可)’로 판정하며, 총장의 승인을 받아 최종 확정한다.

제5조(계열변경 제한) 계열변경 교원 수는 총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학과(전공)의 휴직, 연구출장 및 파견 교원을 포함한 교원 총수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부 칙

이 세칙은 2018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